

요청 도핑검사 및 교육 지원지침

제정	2017. 11. 22.
개정	2018. 9. 18.
개정	2020. 6. 5.
개정	2021. 3..25.
개정	2023. 3.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내대회나 국제대회 등의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및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와 국제경기연맹(이하 “국제연맹”이라 한다) 또는 국내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는 도핑검사 또는 도핑방지교육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소요 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단체, 국제연맹 또는 경기단체가 요청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시료채취기구인 도핑검사와 도핑방지교육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협약 또는 문서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3.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란 대륙별, 지역별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의 주관단체 역할을 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그 외 국제종합스포츠기구의 대륙 간 연합체를 말한다.
4. “도핑방지기구”란 도핑관리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절차의 개시,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한 규정의 채택에 책임이 있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또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소관 대회의 검사를 주관하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국제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구를 포함한다.
5. “국제행사”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기타 국제체육기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스포츠 관련 회의 등을 말한다.
6. “국내행사”란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해당 종목의 대회와 회의, 강습회 등을 말한다.
7. “경기기간 중 검사”란 국제연맹 또는 관련 도핑방지기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 경기 및 해당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절차가 끝나는 기간에 시행하는 도핑검사를 말한다.
8. “경기기간 외 검사”란 경기기간 중이 아닌 모든 기간에 시행하는 도핑검사를 말한다.
9. “검사주관기구”란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는 기구로서 시료

를 채취할 권한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10. “시료채취기구”란 검사주관기구 또는 검사주관기구가 해당 책무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기구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11. “결과관리기구”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검사(또는 기타 잠재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 결과관리 및 청문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12. “도핑방지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도핑방지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깨끗한 스포츠에 동참하고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국제표준」과 「교육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치기반 교육’, ‘인식 제고’, ‘정보 제공’, ‘도핑방지교육’ 등의 4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전문강사, 특별강사가 시행하는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현장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도핑검사 요청

제4조(요청검사의 종류) 요청검사의 종류는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로 한다.

제5조(시료의 종류) 시료의 종류는 소변 또는 혈액으로 한다.

제6조(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결과관리)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기구가 아닌 경우, 도핑검사의 모든 단계와 절차(검사배분계획,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 채취 및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등)는 해당 도핑방지기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기구인 경우 모든 단계와 절차는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제8조(검사요청 절차) ① 검사를 요청하는 단체는 검사시행 최소 2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검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시행 최소 5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해당단체에게 검사시행 계획을 문서로 통보한다. 단, 신기록 검사의 경우는 1일 1건으로 가정하여 통보하며, 신기록이 발생하지 않아도 1건의 비용을 청구한다.

③ 검사시행 최소 2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의 기한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④ 우리나라 선수가 국외에서 개최한 경기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여 현지에서 도핑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연락하여 검사주관기구 및 결과관리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현지 도핑방지기구에 도핑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핑검사 대행료 및 요청 절차 등은 해당 도핑방지기구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⑤ 경기기간 외 검사 요청 시 경기단체는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양식(별지 제2호 서식)을 검사시행 최소 10 근무일 전에 도핑방지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검사주관기구가 국제연맹인 검사 요청의 경우, 경기단체는 해당 국제연맹의 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시료채취 권한 위임과 관련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제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⑦ 국제연맹이 검사대행료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검사대행료의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연맹과 별도 협의한다.

제9조(검사대행료 납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종료 후 제8조 제1항의 검사요청서에 명시된 비용부담기관에 대하여 별표 1의 요청 도핑검사 대행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 검사대행료를 청구한다. 해당 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 요청된 방법에 따라 검사대행료를 도핑방지위원회에 납부한다. 지정 기한 내 검사대행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검사요청기관의 차후 검사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대행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은 제8조 제1항의 검사요청서에 따른 비용부담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기간 외 검사 요청 시 경기단체로부터 제공된 선수 소재지정보의 부정확 또는 선수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검사 실패의 경우, 해당 비용부담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도핑검사관 경비를 도핑방지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우천이나 천재지변, 대회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결정으로 인한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해 도핑검사가 당일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도핑검사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도핑검사관 파견) 도핑검사관 파견 인원수는 시료종류, 대회특성(경기기간 중 검사), 선수의 소재지정보(경기기간 외 검사) 등을 고려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검사 대상 인원과 동일한 수의 샤프롱이 지원될 경우 도핑검사관 1인당 최대 3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샤프롱 지원 미비 등) 도핑방지위원회는 파견 도핑검사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요청기관 협조사항) 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검사를 요청한 단체는 도핑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대회 도핑관리실 구성에 관한 지침(별첨1)에 따라 협조한다.

제3장 도핑방지 교육 요청

제12조(요청 절차) ① 대면교육 등의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는 행사개최 20일(근무일 기준) 전에 도핑방지교육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공문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 공문을 접수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대상, 인원, 장소 등 교육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행사 시작일 5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요청 단체에게 교육 시행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 종료 후 제1항의 도핑방지교육 신청서에 명시된 비용부담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교육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다. 해당 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 요청된 방법에 따라 교육 소요비용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납부한다. 지정 기한 해당 비용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차후 교육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소요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은 제1항의 도핑방지교육 신청서에 따른 비용부담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 도핑방지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의 기한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13조(교육 전문강사 배정) ① 요청 교육의 전문강사 배정은 요청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대면교육은 1인 1강 파견, 현장교육은 1개소 2명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될 수 있다.

③ 전문강사 배정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을 교육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요청기관 협조사항) 도핑방지위원회에 교육을 요청한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하여 대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면교육

가. 교육 장소 및 시설 제공(강의실, 빔 프로젝터, 컴퓨터, 마이크, 유·무선인터넷 등)

나. 최소 교육시간 보장(1시간)

다. 기타 협조사항(질의응답, 인터뷰, 만족도 조사 실시, 참가자 명단 제공 등)

2. 현장교육

가. 현장교육 장소·물품 제공(장소 협의, 부스설치, 책상, 의자 등)

나. 자원봉사자 제공(도핑방지위원회 요청 인원, 최소 인원 2명)

다. 경기장 출입 및 주차 지원(AD카드, 무료주차카드 등)

3. 기타 도핑방지위원회 요청사항

제4장 기타

제15조(업무협약 또는 문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협약 또는 문서 등으로 별도로 정함이 있을 시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를 수 있다.

1. 도핑방지기구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내 개최 국제종합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그에 준하는 대회의 경우

3. 기타 대회 규모와 검사의 성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7. 11. 22.>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18.>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25.〉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 사 요 청 서

구 분	내 용	비 고																																							
대 회 명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대회기간	•																																								
대회장소	•																																								
검사주관기구/ 결과관리기구	•	국제경기연맹(IF) 또는 KADA																																							
경기종목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검 사 일	•																																								
검사종류	• 경기기간 중 검사 / 경기기간 외 검사	택 1																																							
시료종류 및 검사인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35%;">분석유형</th> <th style="width: 10%;">합계</th> <th style="width: 10%;">남</th> <th style="width: 10%;">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소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SAs¹⁾</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GHRFs²⁾</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IRMS³⁾</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ESAs</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GH(Isoform)</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GH(Biomarker)</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BP</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분석유형	합계	남	여	소변	일반				ESAs ¹⁾				GHRFs ²⁾				IRMS ³⁾				혈액	ESAs				GH(Isoform)				GH(Biomarker)				ABP				
		분석유형	합계	남	여																																				
	소변	일반																																							
		ESAs ¹⁾																																							
		GHRFs ²⁾																																							
		IRMS ³⁾																																							
	혈액	ESAs																																							
		GH(Isoform)																																							
		GH(Biomarker)																																							
		ABP																																							
비용부담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li style="padding-left: 40px;">(이 메 일) 																																								
검사요청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li style="padding-left: 40px;">(이 메 일)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요강 및 대회일정 • 국제대회승인서류(대회승인서, 해당 규정 등)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통장 사본 																																								

※ 상기 요청서의 분석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요청 시 별도 문의

※ 상기 요청서와 명시된 첨부서류를 <testing@kada.or.kr>로 제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요청 도핑검사 지원지침'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검사를 요청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요청단체명: _____

담당자: _____ (인)

1) ESAs(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
 2) GHRFs(Growth Hormone Releasing Factors):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
 3) IRMS(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외인성여부 추가 분석법

[별지 제2호서식]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양식

I. 선수 정보 / Athlete Information

1. 선수명	한 글				2. 성 별			3. 생년월일		
	영문(여권기준)				4. 소 속					
5.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6. 거주지주소	거주지①	장소명			주소					
	거주지②	장소명			주소					
7. 훈련장주소	훈련장①	장소명			주소					
	훈련장②	장소명			주소					

※ 주소는 반드시 세부주소(건물명, 동/호수)까지 정확하고 자세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II. 세부 소재지정보 / Whereabouts Details

※ 대회 출전의 경우 대회명과 본인 대회 참가일을 기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장소명	작성 예시	훈련장1	훈련장2	훈련장1	훈련장2	훈련장1	
시간		09:00~11:00	10:00~12:00	05:00~7:00	09:00~12:00	06:00~8:00	
장소명		훈련장2	훈련장1	훈련장2	훈련장1	훈련장2	
시간		13:00~18:00	19:00~24:00	14:00~19:00	17:00~22:00	16:00~21:00	
장소명	거주지1	거주지1	거주지1	거주지1	거주지1	거주지2	
시간	17:00~	13:00~18:00	13:00~18:00	13:00~18:00	13:00~18:00	23:00~	
기타	복귀 18:00		경기 @훈련장 1		경기 @훈련장 1		
구분							
장소명							
시간							
장소명							
시간							
장소명							
시간							
장소명							
시간							
장소명							
시간							
기타							

소재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제출하신 소재지 및 개인정보는 도핑검사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됩니다.

20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도핑방지교육 신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구 분	<input type="checkbox"/> 무상교육 ⁴⁾ <input type="checkbox"/> 유상교육 ⁵⁾				
	교육형태	<input type="checkbox"/> 대면교육 <input type="checkbox"/> 비대면교육 <input type="checkbox"/> 현장교육				
	교육명/행사명					
	일 시		일자/시간			
	장 소	• 장소명(상세주소)				
	참가규모	• 00명(0개국)				
세 부 사 항	종목명 (팀 명)	• 종목명 (학교명 / 팀명 / 구단명)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학부모	기타관계자	
		0명	0명	0명	0명	
교육경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당해연도 기준	
기 타 사 항	단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사업담당자 연락처 기재
	현장 담당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추 가 요청사항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회요강 및 대회일정 				

※ 요청교육에 한하여, 상기 요청서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edu@kada.or.kr>로 송부

4) 도핑방지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단체별 지원 기준 안내를 통해 시행하는 교육
 5) 도핑방지위원회의 지원에 따른 무상교육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교육

[별표 1]

요청 도핑검사 대행료 산정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내 용		단 가	비 고
행정관리비	도핑검사관 운영관리, 검사용품 및 서식, 사무용품, 행정관리비 등	소변	50,000	인 당
		혈액	60,000	
		소변+혈액	70,000	
도핑검사관 경비	수당, 여비, 운송료 등 (숙박비, 항공료 별도 협의)		250,000	인 당
분석비	소변	일반(경기기간중)	270,000	건 당
		일반(경기기간외)	220,000	
		ESAs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	300,000	
		GHRFs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	300,000	
		IRMS (외인성여부 추가분석법)	300,000	
	혈액	ESAs	300,000	
		GH Isoform (5건 이하)	500,000	
		GH Isoform (6~10건)	400,000	
		GH Isoform (11건 이상)	300,000	
		GH Biomarker	600,000	
		ABP (10건 이하)	90,000	
		ABP (11건 이상)	50,000	

- ※ 도핑검사관 파견 인원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의 대상이 아님.
- ※ 본 지침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실패 또는 취소의 경우, 상기 기준표의 '도핑검사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됨(검사관 숙박비 및 항공료 발생 시 도핑방지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비가 추가 청구될 수 있음).
- ※ 검사주관기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본 지침에 의해 도핑방지위원회가 채취한 모든 시료는 국내 WADA 인증 분석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KIST DCC)'에서 분석되며, 상기 분석비 단가는 KIST DCC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IRMS 및 추가시료 발생 시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 도핑방지규정위반 발생 시, 개최 시마다 청문비용과 항소비용이 별도 청구될 수 있음

[별표 2]

교육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

(단위: 원)

구분	내역	단가(원,달러)	비고
강사 수당	1시간 이내	250,000원(\$250)	인당
	1시간 ~ 2시간 이내	300,000원(\$300)	
	2시간 ~ 3시간 이내	350,000원(\$350)	
	3시간 ~ 4시간 이내	400,000원(\$400)	
행정관리비	전문강사 운영관리, 행정관리비 등	50,000원(\$50)	건당

- ※ 유상교육 1회당 강사 수당 및 행정관리비가 발생하며, 숙박비, 항공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 동일 강사가 동일 날짜에 장소나 대상이 다른 교육에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교육을 1회로 산정하여 교육 소요비용을 청구함.
- ※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이 파견될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경비 청구

[별첨 1]

경기대회 도핑관리실 구성에 관한 지침

2023.2. / 도핑검사부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검사관 시료채취 매뉴얼」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 편람」에 따라 도핑관리에 적합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술하여 효과적인 도핑관리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료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 범위: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료채취 현장

구성 원칙

(비 공개) 선수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전용사용) 시료채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청 결) 선수와 시료채취요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

구성 기준

1) 도핑관리실

○ 공통사항을 준수하여 다음 명시된 기능실을 경기단체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제공

- ① 선수대기실: 선수가 시료 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 ② 행정실: 선수 시료 취급 및 관련 도핑관리 서식 작성 장소
- ③ 시료채취실: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장소(화장실)

<공통사항>

- 검사대상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시료채취요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의 공간
- 선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기능실(예: 의무실, 귀빈실 등)과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는 **도핑관리 전용 공간**
- 경기구역에서 **가까운 공간**
- 출입구에 **잠금 기능**이 있고 **출입 통제**가 가능한 공간
- 적정 조명(150~300lx, 일반 사무실 수준)과 냉난방시설을 갖춘 환기가 가능한 공간

<기타사항>

- 시료채취실은 도핑관리실 내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 위치
-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
- 도핑관리실 내부 **알코올음료 반입 및 음용 금지**

2) 물자

- 기능실별 명시된 필요 물자를 경기단체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제공
- 필요 물자 수 : 검사대상 선수 수에 따라 상이 ※ 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 ① 선수대기실
 - 의자, 개별 포장된 무알코올/디카페인 음료(500mL/병, 선수당 최소 3병)
 - 경기중계용 TV(가능한 경우), 휴지통, 옷걸이 등
- ② 행정실
 - 책상(검사관당 1개), 의자(책상당 최소 3개), 칸막이(파티션), 휴지통, 휴지
 - 시료보관용 냉장고, 도핑관리 서식 보관용 캐비닛(가능한 경우) 등
- ③ 시료채취실
 - 양변기, 소변기, 세면시설, 종이수건 또는 손 건조기, 휴지통
 - 필요시 채혈을 위한 침대(간이침대), 거울 등

<예시: 검사대상 선수 수에 따른 필요 물자 수>

선수	책상	의자	음료(생수)	몽골텐트*
1~3명	2개	6개	10병	1동
4~8명	4개	15개	20병	2동
9명 이상	5개	20개	40병	3동

* 야외 경기 등 실내 기능실이 없는 경우 해당(1동 기준 규격은 5m x 5m)

3) 샤프롱

- 선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경기단체 또는 대회주관단체가 제공
- 필요 인원수 : 검사대상 선수의 수와 같음 ※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샤프롱 선정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검사대상 선수와 같은 성별
- 검사대상 선수 또는 시료의 분석결과와 이해관계가 없을 것

<샤프롱 역할 및 책임>

- 선임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선정된 선수에게 통지
- 통지된 선수를 도핑관리실까지 동반 및 관찰
- 도핑관리실 출입관리
-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경우, 소변시료 제공 과정에 대한 입회 및 서명

<참고1> 이상적인 도핑관리실의 모습

<도핑관리실 분리형>

인원수	A(cm) x B(cm)
1~3명	800 x 300
4~8명	800 x 400
9명 이상	800 x 600

인원수	C(cm) x D(cm)	책상	의자
1~3명	360 x 250	1	3
4~8명	360 x 500	2	6
9명 이상	360 x 750	3	9

<도핑관리실 일체형>

※선수대기실과 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간 구분되도록 칸막이(파티션) 등 시설물 설치 필수

<참고2> 자주 묻는 질문(FAQ)

- 4 -

<p>[공간] 야외에서 개최하는 종목 특성상 기능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p>
<p>도핑관리실과 시료채취실(화장실)을 임시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근처에 임시시설(예: 컨테이너, 몽골텐트 등) 및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바랍니다.</p>
<p>[공간] 경기장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준에 적합한 기능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검사대상 선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고 조명, 환기, 냉난방시설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장 내 도핑관리실 준비가 어려운 경우, 경기장 및 화장실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도핑관리실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도핑검사관은 '도핑관리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도핑관리실이 검사의 유효성을 해치거나 선수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다른 공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공간]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p>
<p>도핑검사 대상 선수는 통지받은 후 저음 소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기장 종료 지정 또는 시상식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핑관리실과 시료채취실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때 도핑검사관은 '도핑관리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도핑관리실이 검사의 유효성을 해치거나 선수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다른 공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물자] 반드시 명시된 사항을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p>
<p>책상, 의자, 개별포장된 무알코올/디카페인 음료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물자가 다를 수 있으나, 선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시료채취절차의 완전성 보호를 위해 <참고 3> 평가기준표의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확인하시고 도핑관리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p>[인력] 경기단체 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등이 샤프롱을 할 수 있나요?</p>
<p>샤프롱은 시료채취요원으로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수 또는 시료의 분석결과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검사대상 선수와 이해관계가 있는 동료 선수, 선수지원요원은 샤프롱으로서의 활동이 불가합니다.</p>
<p>[인력] 샤프롱 수당은 얼마인가요?</p>
<p>위원회 '도핑검사관 수당 등의 지급지침' 별표 1(시료채취요원 수당 지급표)에 따라 샤프롱에게는 1 일 기준 30,000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p> <p>※ 수당 지급 예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기단체 및 프로스포츠단체로부터 급여 및 수당을 받는 직원, 심판 등 관계자 ②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시·도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 ③ 요청 도핑검사

<참고3> 도핑관리실 적정성 평가 기준표

선수대기실	의무 ■ 권고 □	예	아니요
① 출입의 통제가 가능한가?	■		
② 1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가?	□		
③ 충분한 양의 개별포장된 무알코올 음료가 준비되었는가?	■		
④ 경기중계용 TV와 도핑방지 교육자료가 준비되었는가?	□		
행정실			
①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출입의 통제가 가능한가?	■		
② 경기구역에 가까이 위치하는가?	□		
③ 검사대상 선수 인원수에 적합한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었는가?	■		
④ 서류작성에 적합한 조명과 냉난방시설을 갖추었는가?	■		
⑤ 시료보관용 냉장고 및 서류보관용 캐비닛이 있는가?	□		
시료채취실(화장실)			
① 2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가?	■		
②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출입의 통제가 가능한가?	■		
③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④ 손 세정 후 건조할 수 있는 물품(종이수건, 건조기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		
⑤ 채혈을 위한 간이침대와 거울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		
기타사항			
① 적정 수의 샴푸통이 준비되었는가?	■		
② 경기장 내 도핑관리실 위치 안내가 되어 있는가?	□		
③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도핑관리실이 위치하는가?	□		

※ 기준에 미흡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협의 필요(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검사관과 조정)

[별첨 2]

도핑검사 요청 절차 안내

- 경기단체용 -

- STEP**
1

**경기단체
공문제출**

검사요청서 (별지서식 1호)와 첨부서류를 검사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무일기준)** 공문으로 신청

- STEP**
2

**KADA
계획통보**

위원회는 검사시행 **5일전(근무일 기준)**까지 해당 단체에게 검사시행 계획과 **대행료**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 STEP**
3

검사시행

위원회는 요청된 시료 종류와 대회 일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적절한 인원의 도핑검사관 파견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 STEP**
4

**경기단체
비용납부**

검사를 요청한 경기단체는 청구일로부터 **20일이내(근무일기준)** 검사대행료를 위원회에 납부합니다.




신기록 검사 사전 요청 시
1일 1건을 가정하여 비용이 청구됩니다.
1건 이상의 신기록 발생 시
추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으며
신기록이 발생하지 않아도
1건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로 연락 바랍니다.
★ 전자우편: testing@kada.or.kr
★ 전화: 02)2045-9800 / 5번

[별첨 3]



KADA

검사요청서작성 요령

- 경기단체용 -

국제대회 시 대회 영문명 기입

“대회기간” 과 “검사일” 을 구분하여 작성
대회기간 : 대회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
검사일 :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날짜

검사주관기구(Testing Authority)
 ▶ 검사를 주관하고 승인한 기구
결과관리기구(Result Management Authority)
 ▶ 잠재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포함한 도핑방지규정위반사항을 관리하는 기구
 국내대회 요청경사 시, “KADA”로 기입
 국제대회 요청경사인 경우, 해당국제연맹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 필수

국제대회 시 종목 영문명 기입

경기기간 중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일 전일
 23시 59분부터 해당 경기와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
경기기간 외:
 “경기기간 중”이 아닌 모든 기간
 별도 소재지정보제출 양식 작성 후 제출

실비응부담단체 작성, 요청기간과 동일시 생략

필수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자 통장 사본

추가 구비 서류
 1) 국내대회인 경우
 - 대회요강, 대회일정
 2) 국제대회인 경우
 - 대회요강, 대회일정, 국제대회승인서류

내용 속지 확인 및 동의서 작성

(별첨 제1호 서식)

검 사 요 청 서

구분	내용	비고			
대회명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대회기간	*				
대회종목	*				
검사주관기구/결과관리기구	*	국제경기연맹(IFA) 또는 KADA			
경기종목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검사일	*				
검사유형	* 경기기간 중 경사시 경기기간 외 검사	비고			
기반유형 또는 검사유형	본격유형	항상			
		ESAs†			
	수면	GHRFa			
		IRMSa			
		ESAs			
		GHRIs(orm)			
	합격	GHRIs(marker)			
		ABP			
		* 단, 경기			
		* 단, 약(부)사(의)의(의)명			
* 연차시(일반 선화) (후대 번호)					
* (이 예 외)					
* 단, 경기					
* 단, 약(부)사(의)의(의)명					
* 연차시(일반 선화) (후대 번호)					
* (이 예 외)					
* 대회요강 및 대회일정					
* 국제대회승인서(국제대회승인서, 해당 규정 중)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 통장 사본					

※ 상기 요청서의 판권유형에 불합격의 경우 검사요청서 별도 발급
 ※ 상기 요청서에 성기부 정보(성명)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요청 도핑검사 지원지침”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검사를 요청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요청단체명: _____ 담당자: _____ (인)

1) ESAs(Erythropoiesis Stimulating Agents) : 인공적 생성 자극 인자
 2) GHRFa(Growth Hormone Releasing Factor) :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
 3) IRMS(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 동위원소비율 측정법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로 연락 바랍니다.

★ 전자우편: testing@kada.or.kr
 ★ 전화: 02)2045-9800 / 5번

